

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94. 7. 19

내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달서구청장
- 나. 제출일자 : 94. 7. 12
- 다. 회부일자 : 94. 7. 12
- 라. 상정일자 : 94. 7. 18

2. 제안설명요지(설명자 : 재무과장 민경철)

가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시행령(94. 7. 6 대통령령 제14317호)이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일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위원의 정수를 “3인이내”에서 “3인”으로 개정(안 제2조)
- 위원의 일비를 “3만원”에서 “5만원”으로 인상(별표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백창기)

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한 조례임. 본 조례 개정은 1994년 7월 6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제15조 별표 4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2조 중 위원 정수와 제13조의 별표 일비 인상에 대한 개정조례(안)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중 검사위원의 선임에 있어 시,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이내로 하되 3인이상 5인이하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 바 본 조례 제2조의 위원정수를

3인으로 한다는 개정(안)에 대하여 토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.

4. 토론요지

- 지방의회의 권한과 의무인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원활하게 하고 행정집행의 감시감독과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자 모범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5인까지 정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법 취지에 맞게 검사위원을 5명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결산검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이 행정집행 내용을 알 수 있게 하고 건전한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요구함(언론매체 및 하부행정조직을 통한 공개)

5. 수정안 요지

-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“3인”에서 “5인”으로 함.
- 부칙 내용을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”를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”로 함.

6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반대 : 없음.

7. 첨부 : 1.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 1부

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(안)

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3인이내”를 “5인”으로 한다.

[별표2]중 구분란 일비의 액수 “30,000원”을 “50,000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”를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	수 정 (안)																		
제2조(위원의 정수)위원의 정수는 <u>3인</u> 이내로 한다. [별표 2]	제2조(위원의 정수)..... <u>3인</u> 으로..... [별표 2]	제2조(위원의 정수)..... <u>5인</u> 으로한다. [별표 2]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85%;">액 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일 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30,000원</u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여 비</td> <td>국내여비규정 “별표2” 여비 지급구분표상 부구청장 상당액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액 수	일 비	<u>30,000원</u>	여 비	국내여비규정 “별표2” 여비 지급구분표상 부구청장 상당액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85%;">액 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일 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50,000원</u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여 비</td> <td>.....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액 수	일 비	<u>50,000원</u>	여 비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85%;">액 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일 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.....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여 비</td> <td>.....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액 수	일 비	여 비
구 분	액 수																			
일 비	<u>30,000원</u>																			
여 비	국내여비규정 “별표2” 여비 지급구분표상 부구청장 상당액																			
구 분	액 수																			
일 비	<u>50,000원</u>																			
여 비																			
구 분	액 수																			
일 비																			
여 비																			
	(부 칙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.	(부 칙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																	